

※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LH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하 "청년 기숙사")의 입주자가 입주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숙사운영위원회)

- ①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관할 LH주거지원종합센터장을 위원장, 본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 1인,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 1인, 관할 주거자산관리부 1인, 관할 광역관리사무소장, 해당 청년기숙사 관리소장 및 외부 기숙사전문가 2인 등 총 7인 이하로 구성하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입사자의 의무위반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안의 발생 시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 ②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기숙사 입사자의 의무위반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조치 결과를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긴급한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제3조 (입주) 입주가 승인된 자(이하 "입사자"라 한다)는 생활관 입주절차에 따라 신상명세서 및 서약서를 기숙사형청년주택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통신)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제5조 (주택 배정) 주택 동호는 주택소재지 관할 LH 주거지원종합센터장이 결정하고, 소장은 배정 내역동호에 따라 입사자가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며, 배정된 주택 동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외부인 출입제한)

- ①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다.
- ②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은 이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7조 (변상)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인원파악) 정기 또는 수시로 인원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고문 게시 및 방송)

- ① 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은 모든 입사자가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공고문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퇴거승인)

- ① LH와 계약한 계약기간(2년) 내 학기 중 휴학자 또는 자진퇴거, 방학 등으로 인한 귀향, 군복무 등 퇴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계약해지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② 퇴거 시에는 출입카드 열쇠 등 기타 지급품을 반환한다.

제11조 (입사자 준수 의무)

- ① 모든 입사자는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통보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생활관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화재, 풍수해, 도난, 긴급환자 등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3.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사항 위반행위가 계약해지사유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및 위반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생활관 시설 내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의 행사
3.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위치변경 등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4. 생활관 시설 내에서 위험물을 사용하는 행위
5. 애완동물의 사육과 영리목적의 상행위(다만, LH가 공급하는 상가에서 영위되는 상행 위는 예외임)

제14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입주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훈계,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서약서 작성의무) 청년 기숙사 입사 시에 본 규정을 숙지하였음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